



정 관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CJ CGV 주식회사 정관

1999년 3월 30일 제정	2002년 9월 17일 개정	2004년 9월 14일 개정
2005년 3월 11일 개정	2006년 3월 24일 개정	2008년 3월 14일 개정
2009년 3월 20일 개정	2010년 3월 19일 개정	2011년 3월 18일 개정
2012년 3월 30일 개정	2017년 3월 24일 개정	2019년 3월 27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 호】

이 회사는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CJ CGV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 【목 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영화관 건설 및 운영
- ② 영화 상영, 제작, 수·출입, 배급 및 기타 영화관련사업
- ③ 문화컨텐츠의 제작, 제공, 유통 및 관련시설 운영업
- ④ 각종 식·음료품 등 판매업 및 식품접객업
- ⑤ 종합소매업
- ⑥ 부동산업 및 부동산 임대업
- ⑦ 체육시설 및 종합 레저·유기시설 설치·운영업
- ⑧ 상품권 발행 및 제작판매업
- ⑨ 극장용 설비 판매 및 수출입업
- ⑩ 전자상거래업
- ⑪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업

⑫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

⑬ 위 각 목적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 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gv.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제 2 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 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식 구만육천주와 기명식 상환우선주식 이십이만사천주로 한다 (설립 당시 1주의 금액인 10,000원 기준).

제8조 【주식의 종류】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에 관한 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 【이익배당우선주식】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 또는 1주당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우선 배당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 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 ④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적 미 배당분에 대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 ⑤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이사회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⑥ 이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 및 동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될 주식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 ⑦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 ⑧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3의 규정의 준용여부는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8 조의 3 【의결권배제주식】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의결권배제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③ 이익배당우선주식을 제1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동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제8 조의 4 【전환주식】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 ③ 전환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되는 전환주식,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④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전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⑤ 이 회사는 전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 및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될 주식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 ⑥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환조건을 변경하거나 전환조건의 조정사유를 정할 수 있다.
 - 2. 전환주식의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 4. 전환주식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할 수 있다.
 - 가. 회사의 재무적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회사의 경영상 필요,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
- ⑦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환조건을 변경하거나 전환조건의 조정사유를 정할 수 있다.
 - 2. 전환주식의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⑧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 10 조의 3 의 규정 준용 여부는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한다.

제 8 조의 5 【상환주식】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상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③ 상환주식은 다음 각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 1.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가산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2.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3.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 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상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가산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이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이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 ①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이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회사를 같은 법률상의 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당해 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 기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기타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⑤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이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⑦ 이 회사는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⑧ 이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

제1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340조의2 및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서 정하는 한도까지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 회사의 임직원 또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에 있어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또는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제8조의2 내지 5의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상법 340조 2의 4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의3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의 결의로 정한다.
-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④ 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의 신고】

(삭제)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

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14조 【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①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보통주식 오백억원, 제8조의2 내지 5의 종류주식 오백억원 이내로 하고 전환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의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한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오백억원, 제8조의2 내지 5의 종류주식 오백억원 이내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의 행사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한다.

제15조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17조 【소집과 통지】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③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사장, 부사장, 상무 및 이사의 순서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의 참석 여하를 불문하고 의결권 있는 주주 전원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는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회의의 안건 이외의 다른 사항은 결의할 수 없다.
- 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과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4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위 주주총회 소집공고는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⑥ 모든 주주총회는 국문으로 진행되며, 주주가 요청하는 경우 영어통역자를 동석시킨다.

제18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사장, 부사장, 상무 및 이사의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대표이사를 대행한다.

제20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또는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 【주주의 의결권】

모든 주주는 그 소유 주식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2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3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총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진행 및 과정에 대한 내용 및 결과는 국문과 영문으로 의사록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 사, 이 사 회

제27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8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의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9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30조 【이사의 보선】

-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2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사장, 부사장, 상무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의2 【집행임원】

(삭제)

제32조의3 【이사의 보고의무】

- ①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의4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위원이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조, 제397조의2 또는 상법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집행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 위 소집통지는 회일 14일 전에 각 이사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며, 의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 【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의결은 재임 이사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 또는 제398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승인은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써 한다.
- ② 이사회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5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국문으로 의사록이 작성되어야 하고, 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영문으로도 작성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5조의2 【위원회】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각 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 ② 이사와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 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③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경영능력을 제공하는 이사에 대해서만 보수를 지급한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회사를 위한 업무로 인해 발생시킨 적절한 출장비 및 기타 경비는 상환해준다.

제36조의2 【이사 겸임】

본 회사의 이사로 지명된 사람이 한국내외의 어떤 법인에 임원이나, 이사, 사원 또는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이사로서 자격미달이라고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38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0 제 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여야 한다.

제 38 조의 2 【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 2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4 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 38 조의 3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 산

제39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⑦ 대표이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 기준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1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 준비금
2. 기타 법정 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41조의2 【주식의 소각】

- ①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 조의 제 3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3 제 3 항 제 1 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은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 말 상법 제 46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④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 2 항 각 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0조 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42조의2 【중간 배당】

- ① 이 회사는 6월 30일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 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② 위 제①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①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중간 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①항의 기준일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 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⑤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8조의2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43조 【배당금지급 청구권의 소멸 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①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04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 2, 제17조 제5항, 제27조 후단(사외이사에 관한 부분), 제31조, 제38조 제3항 단서, 제40조의 2는 이 회사가 상장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6조는 이 정관의 수정 이후 관련법령상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주식이 분할된 이후부터 적용된다.
 -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상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 회사가 상장 될 때까지의 주주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34조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상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 회사가 상장 될 때까지의 이사회 의결은 재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 한다.
2. 이 정관은 200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정관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4. 이 정관은 2008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정관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6. 이 정관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단 4조 개정내용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6. 이 정관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7. 이 정관은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10조, 제14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8조의2, 제40조, 제42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8. 이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신주의 발행에 대한 경과조치)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신주는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각 신주의 발행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각 신주의 발행한도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하는 신주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사채의 발행에 대한 경과조치)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사채는 제14조의2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발행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제14조의2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발행한도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하는 사채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9. 이 정관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9조,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